

품목분류  
CASE 5 이동식 보관 유닛

판정번호  
N360308

물품 정보

용도

- 철강제 이동식 보관 유닛
- 건설 현장·작업 구역 등에 설치

구조

- 플랫폼(분해 후 평평하게 포장) 형태로 운송 후, 사용 장소에서 조립
- 크레인 인양용 고리 및 지게차 포크용 포켓 부착

쟁점 HS



제 8609 호

컨테이너

제 9406 호

조립식 건축물

CBP 판단

- 제8609호 컨테이너는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설계되고 트럭 트레일러·철도 화차 등 특정 운송수단에 적합하도록 제작
- 쟁점물품은 평상형 트럭(flatbed truck)에 적재되어 운송되므로 특정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에 해당하지 않음
- 또한 리프트용 고리 및 지게차 포크용 포켓은 특정 운송수단 전용으로 설계된 구조에 해당하지 않음
- 쟁점물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후 분해 상태로 운송되어 현장에서 재조립 후 창고로 사용되므로, 제9406호 조립식 건축물의 정의에 부합

미국 HS-CODE 결정

9406.90  
조립식 건축물

제8609호 컨테이너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,  
조립식 건축물로 보아 제9406호로 최종 분류